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7. 8. 10.

I. 회의개요

○ 일 시 : '17. 8. 3(목) 10:00 ~ 12:50

○ 장 소 : 정부 서울청사 9층 소접견실

○ 출석위원(8명)

- 주재 : 김지형 위원장

- 참석 : 김영원·김원동·류방란·유태경·이성재·

이윤석·이희진 위원

II. 상정안건(총 4건)

○ (1-4, 의결) 시민배심원단 명칭 재검토(안)

○ (1-5, 의결)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 (1-6, 의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계획(안)

○ (2-3, 보고) 제2차 회의록

III. 의안 심의

① 시민배심원단 명칭 재검토(안)

- (○○○ 위원) ‘시민배심원단’으로 인해 빚어지는 혼선을 바로잡고,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는 공론화위원회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숙의과정 참여자에 대한 독립적인 명칭이 필요했음. 이에 따라 숙의과정 참여자를 지칭했던 ‘시민배심원단’ 명칭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으로 수정하여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시민참여단’을 약칭으로 사용하고 자 함
- (○○○ 위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배심원’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 마치 최종적인 결과만 투표하듯이 알려져 여러 안을 놓고 다 같이 논의를 했음
- (○○○ 위원) 적절한 것 같음
- (위원장) 원안대로 의결함

②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 (간사)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훈령 제7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분과위를 둘 수 있고, 분과위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 조사, 소통, 숙의, 법률 등 4개

분과위로 구성하고 위원은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2~3명의 위원을 각각 4개의 분과위에 적절하게 배분하며, 분과위 위원장은 위원 중 연장자 또는 전공 분야와의 밀접성을 고려하여 선출되도록 하겠음. 간사는 공론화지원단의 소관업무 팀장이 수행토록 하겠음. 분과위 구성(안)은, 조사분과위에는 김영원 위원, 이윤석 위원, 간사는 조사팀장, 소통분과위에는 김원동 위원, 류방란 위원, 간사는 소통팀장, 숙의분과위는 이희진 위원, 유태경 위원, 이성재 위원, 간사는 정보지원팀장, 법률분과위는 김지형 위원장, 김정인 위원, 간사는 기획운영팀장으로 구성(안)을 만들었음.

○ (○○○ 위원) 분과위별로 업무분장을 구분해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협의해야 될 일도 있을 것 같음. 그래서 완전히 분리될 개념은 아닐 것 같음. 또 분과위별로 자문위원으로 모실 분들은 분과위에 일임하고 정해지면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 (간사) 그러함

○ (○○○ 위원) 자문단에 인원 제한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 (간사) 없음

○ (위원장) 원안대로 의결함

③ 시민참여형 조사 계획(안)

- (간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임. 첫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및 공사 속행 동의 여부에 대한 1차 조사, 둘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 선정 및 모집, 셋째, 시민참여단 대상 토론회를 포함한 전체 숙의과정 진행, 넷째, 시민참여단 최종 의견 분석임.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은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진행하고자 함

- (○○○ 위원) 숙의과정 내용을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차 설문조사를 2만 명 대상으로 한 다음에 최종설문을 한 번 하는 것으로 보여짐

- (간사) 현재 안으로는 (답을 정해놓지 않고) 오픈이 된 것임. 예를 들어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세 번 할 것인지 두 번 할 것인지 한 번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놓지 않은 것임

- (○○○ 위원) (제안요청서) 공개는 언제 되는지?

- (간사) 조달청에 뜨는 순간 보게 됨. 5일 이내임

- (○○○ 위원) 시민참여단 층별 배분에서 지역은?
- (○○○ 위원) 500명인 경우 시·도가 들어가면 층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 대신 30개 층 안에서 뽑을 때 체계적으로 지역 안배가 되도록 뽑는 것임
- (○○○ 위원)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자만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 (지원단) 공동이행을 하게 되면 각 업체들의 업무 비중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비중이 높은 업체가 대표업체가 되고 그 대표업체가 제안요청을 한꺼번에 발표하도록 한다는 의미임
- (○○○ 위원) 이 과정이 마크를 달고 가는 것인지(=사용료를 지급하고 피시킨 교수의 공론조사 방식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 (○○○ 위원) 마크를 달고 가는 경우 피시킨 교수가 이미 정해놓은 조사방식과 절차를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의 시민참여형 조사는 이미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음. 피시킨 교수의 공론조사 방식은 하나의 범례로, 우리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 (간사) 시민참여형 조사방법이 피시킨 교수의 저작권 침해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검토하겠음

- (○○○ 위원)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알아서 하는 것인지 명시가 필요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음
 - (지원단) 가점이나 감점하시기 위함이면 명시를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 안하셔도 됨
- (○○○ 위원) 가점을 주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가치판단이 있는 것임. 심사 때 개별로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면 그 부분을 남겨둬도 될 것 같음
- (○○○ 위원) 용역기관이 조사 뿐 아니라 숙의과정까지 진행하면서 자칫 ‘조사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음. 사실상 위원회가 설계한 방식을 중심으로 조사업체가 시민참여형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외부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 (○○○ 위원) 그런 식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임
- (○○○ 위원) 숙의과정과 관련하여 우선협상자와 협상할 때 위원회가 결정한 방식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면 될 것임
- (○○○ 위원) 숙의과정을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할지는 조사업체와 상관없이 미리 충분히 준비해놔야 함
- (○○○ 위원) 그러함. 그게 핵심임

- (○○○ 위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자료집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 (지원단) 콘텐츠를 위원회에서 주면 조사업체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위원) 결국 숙의과정의 실제적인 내용은 위원회에서 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 (○○○ 위원) 발주 의뢰 전에 제안요청서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 (지원단) 큰 틀은 바뀌지 않는데 오탈자, 단어 정도가 있음

- (위원장) 일부 자구 수정은 지원단에 일임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